

●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-169호

「변리사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4월 3일  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**「변리사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**

1. 개정이유

개정 변리사법('17.3.21. 공포, '17.4.22. 시행)에서 규정한 인가 처리기간을 반영하고, 변리사 자격증 발급 대상을 명확히 하며, 기타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특허법인 및 특허법인(유한)의 인가 처리기간 변경

(안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)

개정 변리사법('17.3.21. 공포, '17.4.22. 시행)에서 인가 처리기간을 10일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서식에 변경된 인가 처리기간 반영

나. 변리사 자격증 발급 규정 정비 등

(안 제4조의2, 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)

법률 제13843호 변리사법 전의 법률에 따라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도 변리사 자격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, 변리사 자격증 발급 시 확인이 필요한 현장연수활동 결과표 사본을 신청인이 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제출토록 규정하며, 일부 서식의 인용조항 오기 수정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(참조 : 산업재산인력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 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)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(둔산동) 정부대전청사 4동
- 전자우편 : 9921292@korea.kr
- 팩스 : 042-472-3421

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(전화 042-481-5187, 팩스 042-472-342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